



물질안전보건자료(Material Safety Data Sheet)

디메틸 프탈레이트(Dimethyl phthalate )

Section 1 -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가.제품명 디메틸 프탈레이트(Dimethyl phthalate); Dimethyl 1,2-benzenedicarboxylate
나.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본 제품은 실험실 및 연구용 시약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
다.공급자 정보
회사명 : 삼전순약공업(주) 주소 :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6번길 117(모곡동)
긴급전화번호 : 031-668-0700/3 담당부서 : 안전환경팀
인터넷 주소 : http://www.samchun.com

Section 2 - 유해성 · 위험성

가.유해성위험성 분류 해당없음
나.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
-그림문자 해당없음
-신호어 해당없음
-유해위험 문구 해당없음
-예방조치문구
예방 해당없음
대응 해당없음
저장 해당없음
폐기 해당없음
다.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
NFPA 지수(0~4단계): 보건=0, 화재=1, 반응성=0

Section 3 -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Table with 4 columns: 화학물질명, 관용명 및 이명,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, 함유량(%). Row 1: 디메틸 프탈레이트 (Dimethyl phthalate), Dimethyl 1,2-benzenedicarboxylate, 131-11-3, 100.

Section 4 - 응급조치 요령

가.눈에 들어갔을 때 많은 양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5분 이상 눈을 세척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.
나.피부에 접촉했을 때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즉시 벗고 15분 이상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을 것.
다.흡입했을 때 노출로부터 환자를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정지 및 곤란 시 인공호흡 실시 및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.
라.먹었을 때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.
마.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

Section 5 - 폭발 · 화재시 대처방법

가.적절한(및 부적절한) 소화제 분말소화제, 물, 포말소화제, 이산화탄소
부적절한 소화제:자료없음
나.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열분해생성물: 탄소산화물

**다.화재 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 조치**

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것.  
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등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후 화재진압을 하고 불가능시 즉각 철수 할 것.  
진화가 된 후이라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.  
관계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.

**Section 6 –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**

**가.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**

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말 것. 흡입과 피부 접촉을 피하고 밀폐장소인 경우 공기호흡기 착용 및 환기시키고 발화원을 제거할 것.

**나.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
다.정화 또는 제거방법**

유출방지를 최소화하고 유출물질은 용기에 보관하여 회수할 것.  
유출물질은 모래, 점토, 기타 흡착물질로 흡수시킬 것.

**Section 7 – 취급 및 저장방법**

**가.안전취급요령**

피부접촉, 증기흡입 및 눈에 침입 방지, 모든 용기는 접지시킬 것.

**나.안전한 저장방법  
(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)**

보관용기는 밀봉하여 건조하고 서늘한 곳, 환기가 잘되는 곳에 저장할 것. 혼합금지물질과 격리시킬 것. 49°C 이하에서 저장할 것.

**Section 8 –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**

**가.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**

산업안전보건법:

-TWA: 5mg/m<sup>3</sup>

5mg/m<sup>3</sup> OSHA TWA

5mg/m<sup>3</sup> ACGIH TWA

5mg/m<sup>3</sup> NIOSH 권장 TWA 10시간

**나.적절한 공학적 관리**

해당 노출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며 작업시 반드시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.  
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기장치는 방폭설비를 할 것.

**다.개인보호구**

◦호흡기 보호

호흡용 보호구는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할 것  
작업환경에 따라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영향이 우려될 경우 송기 마스크, 공기호흡기를 착용할 것

◦눈 보호

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성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는 보호구가 필요하지 않음

◦손 보호

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성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는 보호구가 필요하지 않음

◦신체 보호

화학물질 취급장소 근처에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안장치를 설치할 것.

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성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는 보호구가 필요하지 않음

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성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는 보호구가 필요하지 않음

**Section 9 – 물리화학적 특성**

가.외관(물리적 상태, 색 등)	액체(무색)	나.냄새	좋은 냄새
다.냄새역치	자료없음	라.pH	자료없음
마.녹는점/어는점	5.5°C	바.초기끓는점/끓는점 범위	282°C
사.인화점	150°C	야.증발속도	자료없음
자.인화성(고체,기체)	자료없음	차.인화 또는 폭발범위의 상한/하한	8%/0.9%
카.증기압	0.008mbar @20 deg C	타.용해도	0.4g/100ml@25°C
파.증기밀도	6.69	하.비중	1.190
거.n-옥탄올/물 분배계수	1.795	너.자연발화온도	460°C
더.분해온도	자료없음	러.점도	17 mPa.s @20 deg C
머.분자량	194.19		

**Section 10 – 안정성 및 반응성**

가.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상온, 상압에서 안정함.

반응의 가능성	중합하지 않음.
나.피해야 할 조건 (정전기방전,충격,진동 등)	혼합금지 물질과의 접촉을 피할 것. 열, 화염,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.
다.피해야 할 물질	산, 염기, 산화제
라.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	열분해생성물: 탄소산화물

**Section 11 – 독성에 관한 정보**

**가.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**  
자극, 호흡곤란, 명정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.  
혈압 변화, 구역, 구토, 설사, 위통, 두통, 졸음, 현기증, 조정(기능) 손실, 의식불명, 혼수를 일으킬 수 있음.  
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없음

**나.건강 유해성 정보**

◦급성독성 (노출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)	경구: LD50 2400 mg/kg Rat 경피: LD50 4800 mg/kg Rat 흡입: 자료없음
◦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	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.
◦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	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.
◦호흡기 과민성	호흡기도 자극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.
◦피부 과민성	자료없음
◦발암성	자료없음
◦생식세포 변이원성	자료없음
◦생식독성	자료없음
◦특정표적장기 독성(1회 노출)	자료없음
◦특정표적장기 독성(반복 노출)	자료없음
◦흡인 유해성	자료없음

**Section 12 – 환경에 미치는 영향**

가.생태독성	어류: LC50 29 mg/l 96 hr 갑각류: EC50 45.9 mg/l 48 hr 조류: EC50 44 mg/l 72 hr
나.잔류성 및 분해성	잔류성: 자료없음 분해성: BOD5/COD 0.66
다.생물 농축성	농축성: BCF 57 ((16°C), Lepomis macrochirus(Fish, fresh water), 8.74ug/l) 생분해성: 93 (%)
라.토양 이동성	자료없음
마.기타 유해영향	자료없음

**Section 13 – 폐기시 주의사항**

가.폐기방법	적용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.
나.폐기시 주의사항 (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)	혼합금지물질과 분리하여 폐기할 것.

**Section 14 – 운송에 필요한 정보**

가.유엔번호	해당없음
나.유엔적정 선적명	해당없음
다.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	해당없음
라.용기등급	해당없음
마.해양오염물질(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)	자료없음
바.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	해당없음

## Section 15 – 법적 규제현황

가.산업안전보건법	노출기준설정물질
나.화학물질관리법	해당없음
다.위험물안전관리법	제4류 3석유류(비수용성액체)2000L
라.폐기물관리법	지정폐기물
마.기타 국내 및 외국법	해당없음

## Section 16 – 그 밖의 참고사항

가.자료의 출처	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MSDS,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,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
나.최초작성일자	2002. 7. 30
다.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	6 / 2019.01.03
라.기타	

\* 이 MSDS는 작성시 당사의 전문지식, 최신정보 등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공하는 화학물질의 유해·위험성 분류결과는 인용된 참고자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. 주어진 정보는 안전한 취급,사용, 공정,저장,운송,폐기 등에 관한 안내 자료일 뿐이며 제품의 질적 특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음.